

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명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75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: 2019년 1월 14일

발 의 자: 이명순 의원 외 3명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, 제34조에 의거하여 평창군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된 지급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수정(안 제3조)

1) 2019년 : 월 2,320,000원

2) 2020년 ~ 2022년

· 전년도 월정수당 + (전년도 월정수당 ×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(관계법령 발췌)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)

다. 입법예고 : 「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 1항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

라. 집행기관 의견수렴 : 2019. 1. 3 ~ 1. 15

마. 평창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경과

- 1)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: 2018. 11. 19.(월)
- 2)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: 2018. 11. 23.(금)
 - 위촉장 전달 및 위원장 선출
- 3)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: 2018. 11. 30.(금)
 -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범위 결정(안)
 - ⇒ 의정활동비 정액지급 및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결정
 - 평창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 결정(안)
 - ⇒ '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.6%를 초과 인상 결정
 - 2020년~2022년까지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(안)
 - ⇒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적용(범위 초과인상 불가)
- 4)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: 2018. 12. 10.(월)
 - 평창군 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 결정(안)
 - ⇒ 최소금액 3,169만2천원, 최대금액 4,700만원 결정
- 5)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: 2018. 12. 19.(수)
- 6) 제4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: 2018. 12. 19.(수)
 - 평창군 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 결정(안) : 보류
- 7) 제5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: 2018. 12. 28.(금)
 - 평창군 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 결정(안)
 - ⇒ 2019년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4,104만원 결정

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2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2]

월정수당 지급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연도	월 정 수 당
2019년	월2,320,000원
2020년	2019년 월정수당 + (2019년 월정수당 × 201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)
2021년	2020년 월정수당 + (2020년 월정수당 × 2020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)
2022년	2021년 월정수당 + (2021년 월정수당 × 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)

【관계법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

-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 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 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-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9. 4. 1.>
-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

-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8. 10. 30.>
 1. 의정활동비: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"심의회"라 한다)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
 3. 월정수당: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,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, 재정 능력,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,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

[별지 제1호 서식]

비용추계서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) 제1항 제1호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함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2019년도 월정수당은 2,320,000원이며, 2020년~2022년까지 전년도 공무원 봉급인상율에 따라 증가됨
- 2019년 공무원 봉급 인상율은 1.8%이며 향후 같은 비율로 증가할 것을 가정

나. 추계 결과

- 2019년 $2,320,000\text{원} \times 7\text{명} \times 12\text{월} = 194,880,000\text{원}$
- 2020년 $\{2,320,000\text{원} + (2,320,000\text{원} \times 1.8\%)\} \times 7\text{명} \times 12\text{월} = 198,387,840\text{원}$
※ $2,320,000\text{원} + (2,320,000\text{원} \times 1.8\%) = 2,361,760\text{원}$
- 2021년 $\{2,361,760\text{원} + (2,361,760\text{원} \times 1.8\%)\} \times 7\text{명} \times 12\text{월} = 201,958,680\text{원}$
※ $2,361,760\text{원} + (2,361,760\text{원} \times 1.8\%) = 2,404,270\text{원}$ (원단위 절사)
- 2022년 $\{2,404,270\text{원} + (2,404,270\text{원} \times 1.8\%)\} \times 7\text{명} \times 12\text{월} = 205,593,360\text{원}$
※ $2,404,270\text{원} + (2,404,270\text{원} \times 1.8\%) = 2,447,540\text{원}$ (원단위 절사)

다. 재원조달 방안

- 자체재원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의원 이명순
연락처	(033) 330 - 2503

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 年)	계
세 입							
세 출		194,880	198,388	201,959	205,594		800,821
월정수당		194,880	198,388	201,959	205,594		800,821
재원 조달		194,880	198,388	201,959	205,594		800,821
자체 수입	소 계	194,880	198,388	201,959	205,594		800,821
	지방세	194,880	198,388	201,959	205,594		800,821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민간자본							
해외자본	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210mm×297mm [일반용지 60g/m² (재활용품)]